

인천지방법원 2015. 9. 22 선고 2015가단225287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9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7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김슬기

별지